# 문학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10 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항을 자문한다"를 "사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"로 한다.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진흥정책위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제5항 중 "위촉한다"를 "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"로 한다. 제7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7항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제7조(문학진흥정책위원회) ① 문 | 제7조(문학진흥정책위원회) ① 문 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 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 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진흥정 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라 한 책위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라 다)를 둘 수 있다. 한다)를 구성・운영할 수 있다.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(2) -----사항을 자문한다. 사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자문에 응한다. 1. • 2. (생 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③ • ④ (생 략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 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. ----- 성별을 고 려하여 위촉한다.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,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 ----. 다만, 제7 항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해산되 설> 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 <신 설>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

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위

	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